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19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신규제정 하고자함

□ 주요골자

- 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추경조치
- 관계부처 승인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(이하"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무)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
2.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
3.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
4.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은 읍·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의 읍·면은 3명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)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·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.

1. 당해 지역사회에 대한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
2.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수당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】

아동복지법 제6조(아동위원) ①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아동위원을 둔다.

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